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0일

나. 발 의 자: 신홍식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신홍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임.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 보건의료사업 추진,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보건소, 영등포경찰서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마약류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
----------	----

발의연월일: 2022년 11월

발의자: 신흥식, 최봉희, 우경란
이규선 의원(4인)

1.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라. 지원사업(안 제5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11. 9. ~ 11. 14.):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

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4.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영등포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